

고성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에 따른 군의회 의견요청(안)

의안번호	50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0. -6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기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역행되고 있으므로 농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며
- 방류수 방류의 용이 및 하수차집의 원활을 위한 증계펌프장 설치와 차집관거 설치가 원활히 시행될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
-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도 병행 설치하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여 방류해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하고
-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의 진입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된 도로를 폐지하고자 고성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시설결정(변경)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요청함

2.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경과지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폐 지	소로	2	93	8	국지 도로	52	대1-1 동외62-5	동외2-14	일 반 도로		

○도로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2류 93호선	-	도로폐지 감 52 L=52m → 0	본 도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도로로 기 계획되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변경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도로를 폐지

3. 하수도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1	하수도	하수종말 처리장	송학리 1-1일원	12,100	24,093	36,193	도시계획구역외 : 5,200m ²

※주 :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법 제80조에 의거 도시계획법을 준용토록 함.

○ 하수도시설 변경 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	하수종말처리장	하수종말처리장 변경 24,093 A=12,100m ² →36,193m ²	기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지정리가된 우량농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의 보 전 및 이용에 역행되고 있으므로 농지노전 기능을 강화하고, 방류수 방류의 용이 및 하 수차집의 원활을 위한 중계펌프장 설치와 차 집관거 설치가 원활히 시행될수 있는 지역으 로 위치를 변경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 설도 병행설치하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여 방 류해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 성키 위함

4. 주민의견

-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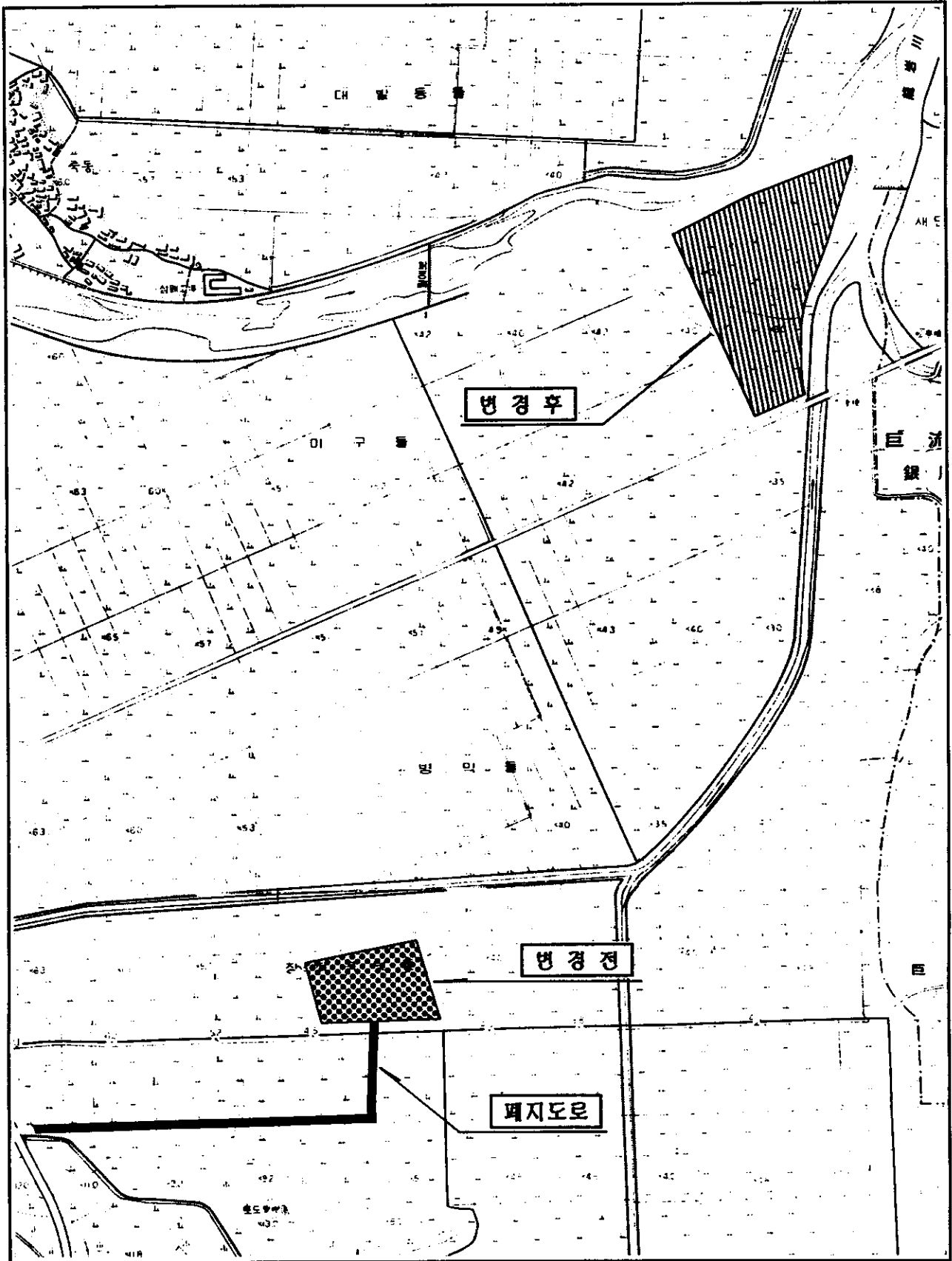
5. 군의회 의견 요청사항

- 고성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에 대한 타당서 여부

6. 덧붙임

-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위치도(S=1 : 5,000)

위 치 도



위 치 도

(중계 펌프장)

